#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83

발의연월일: 2024. 12. 24.

발 의 자: 강훈식 • 박홍배 • 김병기

강준현 • 문진석 • 김교흥

김승원 • 박상혁 • 김한규

송기헌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행정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

그런데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국회에 비해 미약하여 출석 대상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 제출 거부에 대한 규제조항이 현행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같이 출 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거부사유와 관련하여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함(안 제49조 및 제49조의2).

#### 법률 제 호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⑦ 제4항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있다.
- ⑧ 제7항 단서의 자백은 지방의회에서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9조의2(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① 지방의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사무와 관련되어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지방의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 중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지방의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聲明)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성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 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
권) ① ~ ③ (생 략)	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4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	
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	
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	
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	
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	
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u>&lt;후단 신설&gt;</u>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
	<u>야 한다.</u>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	⑤
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	
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u>경우, 같은 항</u>	<u>경우에는</u>
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⑥·⑦ (생 략)

<신 설>

- ⑥ 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 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1 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제4항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을 하였을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⑧ 제7항 단서의 자백은 지방 의회에서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u>⑨·⑩</u> (현행 제6항 및 제7항 과 같음)

제49조의2(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① 지방의 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 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 무 또는 시 · 도의 사무와 관련 되어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 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 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 다. 다만, 군사 · 외교 · 대북 관 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 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해당 관서 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 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지방의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 중 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지방의 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성명(聲明)을 요구할

<u>수 있다.</u>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성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없다.